

주 관 국 (과)	사 무 명	비 고
산업경제국 (고용안정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관리운영 ○ 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관리운영 ○ 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관리운영 ○ 시립엘립전문학교 관리운영 ○ 시립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○ 시립근로자합숙소 관리운영 	
문화관광국 (문화재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놀이마당 관리운영 ○ 몽촌토성 관리운영 	
문화관광국 (체육청소년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○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○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○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○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○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○ 시립구로청소년쉼터 관리운영 ○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관리운영 ○ 시립신림청소년쉼터 관리운영 ○ 시립청소년종합상담실 관리운영 ○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관리운영 ○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 ○ 시립중앙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○ 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 관리운영 	
환경관리실 (폐기물시설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○ 노원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○ 양천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	
건설국 (한강관리사업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관리운영 	
상수도사업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수도배급수관 시공감독 ○ 상수도공사 포장도로굴착복구 시공감독 	
<p>1998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·세출,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</p>		
<p>검토의견</p> <p>1. 일반회계 가. 세 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98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은 도 	<p>시개발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환된 재정투융자기금 6,2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372억, 동아건설기부금 139억 5,0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 수입 16억 600만원, 행락질서국토대청결운동 등 정부특별교부세 29억 9,500만원,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1,055억원임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수금 이자가 당초 예산액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당초 재정투융자기금 1,901억 	

원을 융자금 회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자수입이 증가했음.

- 잡수입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동아건설 기부금 139억 5,0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이며
- 국내차입금이 당초보다 945억원이 감소한 것은 IMF로 인한 정부의 재정악화로 인한 것임.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금에 출연할 시 6%의 이자를 받고 정부채투기금에서 차입할 시 6.5%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인지는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, 세입예산 편성은 모든 정황을 사전에 충분히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
나. 세 출

-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1,018억 8,4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14억 6,000만원, 이·전용이체 차액 136억 7,6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,170억 2,000만원이며, 이중 97.2%인 1,137억 7,000만원을 당해년도에 지출하고, 0.2%인 2억 6,8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, 불용액은 2.6%인 29억 8,200만원임.
-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은 다음년도 이월 등에 있어 예산운영상 범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, 불용액이 전년도에는 예산현액의 3.3%인 34억 3,900만원이었으나, 금년도에는 2.6%인 29억 8,200만원으로 '97회계년도에 비하여 0.7% 감소하였습니다.

-예산담당관의 불용액중 실업대책위원회 운영예산 900만원은 예산을 전용하고 전액 불용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
-조직제도담당관의 직제규정집, 조직변천사 미발간 등 7,600만원 불용은 '98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했다고 사료되며, 울지로별관 시설비 낙찰차액 등이 7,400만원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,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5억 9,076만원을 미집행한 것은 IMF로

인한 긴급재정 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
-법무담당관의 보상금이 평균 불용액을 초과한 것은 법률고문을 축소운영하여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보여짐.

-전산정보담당관의 일반수용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서울시 통계연보 DB자료 입력을 공공근로 활용하여 미집행, LAN, WAN 전용회선 축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, 포상금은 컴퓨터 활용능력 측정대회 축소, S/W 개발경진대회 시상금축소 등에 따른 예산불용이라고 보여지며,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.3%인 3억 3,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보여짐.

-전산정보관리소 연구개발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업무용 프로그램 수정 및 자료변환개발 용역비를 자체개발하여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, 시설비가 약 62% 불용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기관운영비는 '98년도 서울시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불용액이라고 보여짐.

○ 기획예산실 소관 '98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보여집니다만 전산장비구입 부분 등 연초에 사업을 완료하고 많은 불용액이 예상된다면 추경편성시 감 편성하여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.

2. 재정투융자기금

○ 재정투융자기금은 '92.1.15. 제정된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·운용되는 것으로

○ '98회계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예산액은 -도시철도공사 152억원, 수도사업특별회계 73억원, 주택사업특별회계 25억원 회수

-'97년 말 총 융자금 1조 4,128억 4,500만원에 대한 연리 7%의 이자 802억 6,600만원

-적립금에 대한 이자 연리 9.7%~19.5%,

이자 949억 3,300만원
 -전년도 이월금 4,100억 4,400만원
 -토지구획정리사업비 장기차입금수입 550억원을 합하여 6,652억 4,3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, 예산액 중 이자수입 감소로 인하여 수납액은 6,586억 8,300만원
 -IMF 기간중 금융기관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당초보다 128억 2,100만원이 증액되었음.

○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은 '97년보다 사업수입이 31억원, 사업외수입은 150억원이 각각 증가되었고, 차입금은 26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. 지출은 사업비 1,468억원, 차입금 상환 802억원이 각각 증가되고 여유자금(예비비)은 2,07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.

3. 예비비 : 없음.

4. 채 권

○ 채권종류는 소송사건과 관련한 공탁금으로서

○ '97년도 현재 공탁금현황은 '93.1.25자 공탁번호 93금 제270호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사건으로 공탁한 60억원 등 9건 60억 700만원이며, '98년도에 회수한 공탁금은 95금 제4405호 외 5건에 1,900만원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.

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

○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'98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은 시정개발연구원 수탁사업 1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시정개발연구원 수탁사업 재검토 요망

가. 현황 및 문제점

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용역 외에 각 자치구 및 서울시 투자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.

1. 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업적 연구로 분류될 소지가 있음.

2. 수탁사업에 부과하는 사업운영비는 수탁사업이 연구원의 전 과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부과되어야 하나 현저히 부과금액이 적음.

3. 수탁사업을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'98년중 타 기관에 하청한 금액 비율은 47.5%(27건 4건만 자치수행하고 100% 하청기관이 수행한 건은 7건에 이름)로서 주용역 수행주체를 알 수 없음.

나. 시정권고

1. 수탁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결세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.

2. 수탁사업이 연구원 전 용역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전에 예측하여 사업운영비의 적정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.

3. 하청금액 비율이 50% 이상 초과하는 수탁사업은 해당기관이 직접 용역을 발주토록 함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.